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2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고동진·박충권·박준태

김대식 · 성일종 · 강선영

김성원 · 강승규 · 이인선

박덕흠 · 서일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,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, 현행 주 52시간(법정 근로시간 40시간 + 연장 근로시간 12시간)이라는 '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'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해외 사례를 보면,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,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,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'고도(高度) 전문직 제도'를 시행하여 R&D 등에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.

이에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,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,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임(안 제59조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근로시간의 특례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9조의2(국가첨단전략산업 분
	야 근로시간의 특례) 「국가첨
	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
	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
	른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
	이,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
	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
	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
	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
	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
	<u>있다.</u>